◉국토교통부령 제1509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5년 07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 ㉿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. 일반택시운송사업	30대 이상	20대 이상 (부산광역시의 경우 30대 이상)	20대 이상	5대 이상

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중 “시・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”을 “시・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로, “40퍼센트”를 “50퍼센트”로 한다.

부　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에 관하여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・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특별시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에서 30대 이상으로, 광역시의 경우에는 30대 이상에서 20대 이상으로 하는 등 완화하고,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을 종전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국토교통부 제공>